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고, 지방행정·자치분권·사회연대경제·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폐지하면서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의 명칭을 참여혁신국으로 변경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체계적·효율적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하부조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운영지원과·디지털정부혁신실·조직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지방재정경제실”을 “운영지원과·인공지능정부실·자치혁신실·지방재정경제실·참여혁신국·조직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5.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7.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8.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

리

10.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1.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12.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13.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4.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15.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16.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8.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20.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2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22.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4.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6.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7.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에 관한 사항
2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 · 조정
2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3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 · 번역 업무 지원
33.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 · 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3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 · 지원
35.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 · 추진 및 홍보
3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 · 개발
및 보급
3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8. 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 · 조정
39. 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40. 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1.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 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 · 감독
42.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 · 감독
43. 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4. 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 · 조정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인공지능정부실) ① 인공지능정부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공지능정부실에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데이터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조정
1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6.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20.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
립
21.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2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운영
30.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에 관한
사항
33.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3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5.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3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3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8.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9.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0.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
에 관한 사항
41.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42.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 4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 44.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45.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 46.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 47.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조정
- 48.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통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9.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 50.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안정성에 관한 사항
- 5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 5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 5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54.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5.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 56.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57.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8.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59.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60.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조성
- 61.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6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63.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 64.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 65.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66.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 67.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 68.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 69.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에 관한 사항
- 7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71.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2.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73.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구성에 관한 사항
- 74.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
한 사항
- 75.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 76.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제3항제50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치혁신실) ① 자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치혁신실에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사회연대경제국 및 균형발전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

• 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1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2.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4.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5.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1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17.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1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

사·연구

2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27.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8.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30.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
용계획의 수립·지원
31.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
·관리
32.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33. 지역사회혁신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의 운영
3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35. 지역사회혁신 통계·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36.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3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38.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
전파 및 교육·홍보

39.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 방안 연구
40.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2.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기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협조
43.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44.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4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46.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47.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48.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49.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50.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51.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5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5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5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5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5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57.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58.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의 운영
5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60.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1.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2.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3.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4.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7.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68.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 69.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 70.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7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 7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 73.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 7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 75.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감독
- 76.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7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 7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 7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의 지원 및 개선
- 80.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
원
- 8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
원
- 83.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85.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86.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87. 기본사회 관련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④ 지방행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자치분권국장은 제3항제27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제3항제57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균형발전국장은 제3항제77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참여혁신국) ① 참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

· 평가

5.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6.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7.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8.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9.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10.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

· 운영 및 지원

11.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4.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5.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및 협업시스템 운영·개선
18.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9.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0. 지식행정의 활성화 추진
2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23.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24. 공무원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2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2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30.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32.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33.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지역경제지원국”을 “지역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3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8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44.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5.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46.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47.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정비
50.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5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53.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4.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감독
55.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6.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57.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58.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9.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0.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1.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62.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사업의 추진

제14조(중전의 제15조) 제6항 중 “제57호”를 “제62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10.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11.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14.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5.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6.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17.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18.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2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21.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
2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 관리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25.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26.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7.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28.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9.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3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3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32.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 33.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 34.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35.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36.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 37.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38.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
한 사항
- 39.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40.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1.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 4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 43.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4.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45.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6.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7.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48.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9.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50.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제4항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
16호부터 제47호”를 “제3항제17호부터 제4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를 “제3항제44호부터 제50호”로 한다.

제23조제3항제9호 중 “자연재해분야”를 “재난안전 분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
회재난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재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야 협업정
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총괄
9.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1.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13.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16.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17.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8. 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19. 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0. 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2.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3. 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24. 사회재난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5.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26.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27.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8.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0.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31.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33.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4.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제23조의2제4항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4호부터 제30호”를 “제3항제18호부터 제34호”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114명”을 “117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635”를 “1,6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05”를 “1,62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5”를 “3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1,536”을 “1,553”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64조제1항 관련)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1명
나.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1개 과	0명
다.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1개 과	9명
라.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1개 과	6명
마.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1개 과	2명
바. 참여혁신국 1개 과	2명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개 과	0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 · 디지털정부혁신실 · 조직국 · 지 방행정국 · 자치분권국 · 균형발 전지원국 ·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③ (생략)	제4조(하부조직) <삭제> ① ----- 운영지원과 · 인공지능정부실 · 자치혁신실 · 지방재정경제실 · 참여혁신국 · 조직국 -----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 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행정 · 자치분권 · 균형발 전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 리	<삭제>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 립 · 종합 · 조정 및 주요 현안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 립 · 종합 · 조정 및 주요 현안

의 관리

2. 예산의 편성 · 집행 · 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5.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 추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 선정, 추진상황 확인 · 점검 및 관리

7의2.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8.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 · 조정 및 지원

9.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담당 실 · 국 지정 및 협의 · 조정

10.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 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 · 개선 및 총괄

12.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

의 관리

2. 예산의 편성 · 집행 · 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 추진

5.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 에 관한 사항

6.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 감독 등 총괄

7.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8.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 선정, 추진상황 확인 · 점검 및 관리

10.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1.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의 총괄 · 조정 및 지원

12.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 · 개선 및 총괄

13.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외평가 총괄

13.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14.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 · 개선
15.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6.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7.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 감독 등 총괄
18.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20. 법령 · 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2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 · 조정
22.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 조정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4.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 ·

14.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15.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 · 개선
16.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8.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20. 법령 · 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2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 · 조정
22.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 조정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4.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 · 조정 및 추진
2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

<u>조정 및 추진</u> 25. <u>부 내 정보화 예산(법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 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u> 26. <u>부 내 정보자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u> 27. <u>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 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 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u> 28. <u>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 · 조 정</u> 29. <u>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30. <u>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에 관한 사항</u> 31. <u>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 · 추진 및 홍보</u> 32. <u>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 구 · 개발 및 보급</u> 33. <u>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 한 사항</u> 34. <u>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 협력 사업 관련 통역 · 번역</u>	<u>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u> 26. <u>부 내 정보자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u> 27. <u>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 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 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u> 28. <u>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 · 조 정</u> 29. <u>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30. <u>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에 관한 사항</u> 31. <u>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 한 사항</u> 32. <u>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 협력 사업 관련 통역 · 번역 업무 지원</u> 33. <u>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 · 기관에 대한 정책자문</u> 34. <u>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 무 연구 · 지원</u> 35. <u>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 · 추진 및 홍보</u> 36. <u>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u>
---	--

<u>업무 지원</u> 35. <u>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u> 36. <u>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u> 37. <u>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u> 38. <u>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조정</u> 39. <u>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u> 40. <u>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u> 41. <u>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감독</u> 42. <u>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u> 43. <u>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u> 44. <u>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조정</u> 제12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u>디지털정부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u>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u> 37. <u>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u> 38. <u>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조정</u> 39. <u>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u> 40. <u>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u> 41. <u>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감독</u> 42. <u>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u> 43. <u>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u> 44. <u>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조정</u> 제12조(인공지능정부실) ① <u>인공지능정부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② <u>인공지능정부실에 인공지능</u>
---	---

② 디지털정부혁신실에 디지털 정부정책국, 정부혁신국, 공공지능데이터국 및 공공서비스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 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 ·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 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 ·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u>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u> <u>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7.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u> <u>· 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u> <u>8.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u> <u>사항</u> <u>9.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u> <u>· 지원과 사업 추진에 관한</u> <u>사항</u> <u>10.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u> <u>한 사항</u> <u>11.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u> <u>통합에 관한 사항</u> <u>12.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u> <u>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u> <u>조성</u> <u>13.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u> <u>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유</u> <u>지관리에 관한 사항</u> <u>14.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운영</u> <u>· 관리 안정성에 관한 사항</u> <u>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u> <u>운영 지원</u> <u>1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u> <u>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u> <u>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u>	<u>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7.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u> <u>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u> <u>항</u> <u>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u> <u>역량강화에 관한 사항</u> <u>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u> <u>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u> <u>10.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u> <u>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11. 공공데이터에 관한 제도·</u> <u>정책의 연구·개선과 기본계</u> <u>획의 수립·총괄·조정</u> <u>1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u> <u>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u> <u>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u> <u>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u> <u>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u> <u>사항</u> <u>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u> <u>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u> <u>원</u> <u>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u> <u>본계획의 수립·추진</u> <u>16.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u>
--	--

<u>사항</u> 1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 · 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1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 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 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 추진 21.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 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2.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 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 한 사항 23.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 기반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 항 2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	· 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 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 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 한 사항 1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 의 발굴 및 수행 20.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21.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 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 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 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 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	---

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28.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29.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0.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31.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32.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3.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4.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36.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2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운영

30.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에 관한 사항

33.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3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5.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간 협의·조정

3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3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u>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추진</u> 37. <u>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u> 38. <u>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u> 39. <u>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평가</u> 40. <u>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확산</u> 41. <u>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u> 42. <u>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u> 43. <u>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u> 44. <u>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u> 45. <u>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u> 46. <u>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및 협업시스템 운영·개선</u>	38. <u>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u> 39. <u>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40. <u>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u> 41.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42. <u>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u> 43. <u>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u> 44. <u>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u> 45. <u>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u> 46. <u>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	---

47.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48.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49. 지식행정의 활성화 추진

50.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5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52.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53.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54.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5.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6.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57.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8.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47.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조정

48.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통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0.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안정성에 관한 사항

5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5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5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54.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5.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

제공에 관한 사항

- 59.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 6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 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 62.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3.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 64.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 65.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 66.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 67.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 68.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 69.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

추진

- 56.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57.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8.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59.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60.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 61.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6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63.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 64.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 65.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66.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u>안 제도의 운영 · 개선</u> 70. <u>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u> <u>☑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u> <u>단의 구성 · 운영 및 지원</u> 71. <u>공공데이터에 관한 제도 ·</u> <u>정책의 연구 · 개선과 기본계</u> <u>획의 수립 · 총괄 · 조정</u> 72. <u>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u> <u>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u> <u>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분과</u> <u>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73. <u>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u> <u>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u> <u>사항</u> 74. <u>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u> <u>도 · 정책의 총괄 · 조정 및 지</u> <u>원</u> 75. <u>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u> <u>본계획의 수립 · 추진</u> 76. <u>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u> <u>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u> <u>항</u> 77. <u>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u> <u>구축 · 운영 및 활용을 위한</u> <u>정책의 수립</u> 78. <u>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u>	67. <u>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u> <u>통 기반의 구축 · 지원</u> 68. <u>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u> <u>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u> 69. <u>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u> <u>(EA)의 도입 · 확산에 관한 사</u> <u>항</u> 70. <u>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u> <u>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u> <u>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u> <u>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71. <u>지역정보화 정책 · 사업의</u> <u>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72. <u>지역정보화 관련 법인 · 단</u> <u>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u> 73. <u>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u> <u>성에 관한 사항</u> 74. <u>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u> <u>응용서비스의 개발 · 확산 및</u> <u>이용에 관한 사항</u> 75. <u>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u> <u>마트워크(smart work)에 관</u> <u>한 사항</u> 76. <u>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u> <u>협업시스템의 구축 · 운영</u> ④ <u>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제</u>
---	--

의 발굴 및 수행

7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

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0.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

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8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

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2.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

· 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83.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

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4.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

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

한 사항

85.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

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

원

86.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

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7.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

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88.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

통 기반의 구축·지원

8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
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제
3항제50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90.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91.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EA)의 도입·확산에 관한 사
항
92.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
과 총괄·조정
93.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
· 통합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 사항
94.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
과분석에 관한 사항
95.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6.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
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
화에 관한 사항
97.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
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유
통에 관한 사항
9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99.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
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운
영

100.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
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
한 사항
101.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0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
령 및 제도 개선
10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
관 간 협의·조정
104.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
치에 관한 사항
106.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
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07.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
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
획의 수립 및 시행
108.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110.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정부혁신국장은 제3항제36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제3항제71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공공서비스국장은 제3항제85호부터 제1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 설>

제13조(자치혁신실) ① 자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치혁신실에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사회연대경제국 및 균형발전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 · 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 · 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 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 ·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 · 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 · 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 지원

1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2.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4.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5.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1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17.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1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 2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
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2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2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
악 및 대응
- 2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2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
정 및 대응
- 27.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 28.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
무의 총괄·조정
- 2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
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 30.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
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지원
- 31.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
·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
M)의 개발·관리
- 32.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33. 지역사회혁신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의 운영
3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35. 지역사회혁신 통계·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36.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3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38.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39.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40.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2.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기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협조

43.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의 운영·발전
44.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4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46.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47.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48.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49.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50.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51.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

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5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
원

5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5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
의 연구·개선

5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5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57.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58.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의
운영

5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60.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1.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2.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3.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
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4.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

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7.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68.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69.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70.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7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73.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7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
원
75.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
· 감독
76.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사항
7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
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7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7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기금 관리의 지원 및 개선
80.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중
합계획의 수립·시행
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
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
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8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
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
에 대한 지원
83.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제13조 (생 략)

제14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
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
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85.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86.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87. 기본사회 관련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④ 지방행정국장은 제3항제1호
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자치분권국장은 제3항제27
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
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제3항
제57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
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균형발전국장은 제3항제77
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
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삭 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 ·

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 · 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 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 ·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 · 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 · 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

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

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

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3.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

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 협조

14.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

동 해외사업의 지원

15.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1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

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2.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

·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

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사업의 추진

2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24.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

비

25.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26.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

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

에 관한 조사·연구

27.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

악 및 대응

29.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3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지원

5.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6.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삭 제>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6의2.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
한 사항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
제 개편 관련 법·제도의 운
영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기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협조

9.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
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의 운영·발전

10.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 분할·통합·명칭변경, 관
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
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
분에 관한 연구·지원

1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
구·개선 및 운영 지원

14.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

- (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 선
1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16.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18.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19.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20.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2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2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2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2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제14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의 지원 및 개선

4.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삭 제>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6.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7.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10.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획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1.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14.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5.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16.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

의 지원

17.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

획·연구 및 지원

18.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

진

19.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

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20.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21.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2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5.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6.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

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

대책의 추진

<신 설>

제15조(참여혁신국) ① 참여혁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평가
5.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6.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7.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8.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9.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10.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 11.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2.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3.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14.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15.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6.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7.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및 협업시스템 운영·개선
- 18.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19.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20. 지식행정의 활성화 추진
- 2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 22. 정부통합지식 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 23.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지원

24. 공무원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2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2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 · 점검 및 평가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
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30.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
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 · 개선

32. 문서 · 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33.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
관 업무의 운영 지원

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생략)

②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및 지역경제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2. (생략)

43.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44.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5.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 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정비

47.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48.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49.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제14조(지방재정경제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경제국 -----

-----.

③ -----
--.

1. ~ 42. (현행과 같음)

43.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 창출 총괄 지원

44.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5.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46.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47.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정비

<u>5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u> <u>· 감독</u> <u>51.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u> <u>한 사항</u> <u>5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u> <u>체 출자·출연기관 정책 수립</u> <u>총괄</u> <u>5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u> <u>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u> <u>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u> <u>5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u> <u>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u> <u>55.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u> <u>감독</u> <u>56.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u> <u>영에 관한 사항</u> <u>5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u> <u>운영 지원</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50.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u> <u>지원</u> <u>5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u> <u>체 출자·출연기관 정책 수립</u> <u>총괄</u> <u>5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u> <u>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u> <u>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u> <u>53.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u> <u>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u> <u>54.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u> <u>감독</u> <u>55.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u> <u>영에 관한 사항</u> <u>56.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u> <u>운영 지원</u> <u>57.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u> <u>58.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u> <u>및 유통에 관한 사항</u> <u>59.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u> <u>개발에 관한 사항</u> <u>60.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u> <u>사항</u>
--	---

<신 설>

<신 설>

④ · ⑤ (생 략)

⑥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제3항 제41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 (생 략)

제22조(안전예방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 총괄 · 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 지원

61.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 대책의 추진

62.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 ·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 · 지원사업의 추진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62호 -----.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22조(안전예방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 총괄 · 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 지원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10.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11.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10.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11.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u>13.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u> <u>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u> <u>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u> <u>15.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u>16.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u> <u>17.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u>18.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u> <u>19.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u> <u>20.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u> <u>2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 관리</u> <u>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u>2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u>	<u>13.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u> <u>14.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u> <u>15.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u> <u>16.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u> <u>17.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u> <u>18.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u>19.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u> <u>2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u> <u>21.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u> <u>2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 관리</u>
--	--

<u>안전기준 협의 · 조정</u>	<u>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u>
<u>24. 안전기준의 등록 · 심의 등</u>	<u>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u>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u>	<u>24.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의</u>
<u>· 운영</u>	<u>안전기준 협의 · 조정</u>
<u>25.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u>	<u>25. 안전기준의 등록 · 심의 등</u>
<u>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u>	<u>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u>
<u>26. 생활안전정책 총괄 · 지원</u>	<u>· 운영</u>
<u>27.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u>	<u>26.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u>
<u>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u>	<u>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u>
<u>개선</u>	<u>27. 생활안전정책 총괄 · 지원</u>
<u>28.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u>	<u>28.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u>
<u>조사 점검 및 평가</u>	<u>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u>
<u>29.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u>	<u>개선</u>
<u>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u>	<u>29.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u>
<u>· 지원</u>	<u>조사 점검 및 평가</u>
<u>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u>	<u>30.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u>
<u>기획 · 제도개선</u>	<u>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u>
<u>31.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u>	<u>· 지원</u>
<u>성사업 추진</u>	<u>3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u>
<u>3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u>	<u>기획 · 제도개선</u>
<u>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u>	<u>32.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u>
<u>33. 어린이 보호구역 · 도시공원</u>	<u>성사업 추진</u>
<u>·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u>	<u>3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u>
<u>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u>	<u>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u>
<u>한 사항</u>	<u>34. 어린이 보호구역 · 도시공원</u>
<u>34.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u>	<u>·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u>

<u>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u> 35. <u>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u> 36. <u>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총괄</u> 37. <u>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38. <u>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u> 39. <u>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u> 40. <u>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u> 41. <u>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 42. <u>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 43. <u>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u> 44. <u>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u>	<u>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35. <u>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u> 36. <u>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u> 37. <u>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u> 38. <u>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 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u> 39. <u>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u> 40. <u>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41. <u>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u> 42. <u>「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u> 43. <u>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44. <u>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u> 45. <u>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u>
--	--

45.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
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6.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47.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8.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
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9.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0.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
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
한 사항

51.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2.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53.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
· 정책에 관한 사항

54.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
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
한 사항

④ 안전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
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6.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
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
한 사항

47.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8.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49.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
· 정책에 관한 사항

50.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
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
한 사항

④ -----
--- 제16호-----
-----.

⑤ 예방정책국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자연재난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 45. (생략)

④·⑤ (생략)

제23조의2(사회재난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재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야 협업

⑤ ----- 제3항제17호부터 제43호-----
-----.

⑥ ----- 제3항제44호부터 제50호-----
-----.

제23조(자연재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안전 분야 -----

10. ~ 4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사회재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재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야 협업

<u>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u>	<u>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u>
<u>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u>	<u>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u>
<u>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진 단 및 컨설팅</u>	<u>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진 단 및 컨설팅</u>
<u>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u>	<u>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u>
<u>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u>	<u>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u>
<u>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 육 및 전문인력 양성</u>	<u>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 육 및 전문인력 양성</u>
<u>7.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 · 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 보급</u>	<u>7.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 에 관한 사항</u>
<u>8.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 영 총괄</u>	<u>8.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 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총괄</u>
<u>9.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 원인조사에 관한 지원</u>	<u>9.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10.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 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u>	<u>10.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운영</u>
<u>11.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 관의 육성 및 지원</u>	<u>11.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u>
<u>12.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 난 대비체계 구축</u>	<u>12.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u>
	<u>13.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u>

13. <u>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u>	<u>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
14. <u>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u>	14. <u>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
15. <u>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u>	15. <u>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u>
16. <u>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6. <u>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u>
17. <u>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u>	17. <u>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u>
18. <u>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18. <u>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u>
19. <u>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u>	19. <u>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u>
20. <u>사회재난 관련 원인·상황 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u>	20. <u>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u>
21. <u>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u>	21. <u>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u>
22. <u>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u>	22. <u>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23.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4.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
에 관한 사항

26.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 · 점검에 관한 사항

27.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29.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
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0.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23. 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지원

24. 사회재난 관련 원인 · 상황
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
의 운영

25.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 · 해제에 관한 사항

26.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
방법의 개발 · 보급

27.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8.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
에 관한 사항

30.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 · 점검에 관한 사항

31.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33.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
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④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제3항 제1호부터 <u>제13호</u>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사회재난대응국장은 <u>제3항 제14호</u>부터 <u>제30호</u>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114명</u>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u>34.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u> ④ ----- ----- <u>제17호</u>----- -----. ⑤ ----- <u>제3항 제18호</u>부터 <u>제34호</u>----- -----.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117명</u>-----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35</u>	<u>1,653</u>	+18
•	•	•	
•	•	•	
일반직 계	<u>1,605</u>	<u>1,623</u>	+18
고위공무원단	<u>35</u>	<u>36</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36</u>	<u>1,553</u>	+17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7